

SIDEX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를 의미한다.
'주최자'라 함은 SIDEX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 부스위치 선정

주최자는 부스 참가규모, 참가실적, 신청순위, 전시품을 기준으로 부스 배정 및 위치를 선정할 권한을 갖는다.
주최자는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할당된 부스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권한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참가신청 및 납부절차

참가 신청서는 SIDEX 조직위원회 사무국에 정해진 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과 동시에 계약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잔금은 정해진 일자까지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주최측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최자의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 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 할 것이다.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안전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7조 전시장 관리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시품은 배정된 전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 일부 사용 취소 및 위약금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잔금 납입일 후 취소 : 취소부스/신청부스 x 참가비 x 80%
- 잔금 납입일 전 취소 : 취소부스/신청부스 x 참가비 x 50%

제9조 해약 및 해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잔금 납입일 후 취소 : 참가비의 80%
- 잔금 납입일 전 취소 : 참가비의 50%

제10조 전시회 취소,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단, 불가항력 등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양도 및 전대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청부스를 타 업체에 양도 혹은 전대를 할 수 없다.

제12조 책임

주최자는 어떠한 원인으로 야기된 전시자의 물품의 손실과 또는 손상 또는 상해에 대해서도 전시자에게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없다.

제13조 전시자에 의한 계약의 취소와 철회

전시자가 배정된 부스를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최자는 즉시 계약을 종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부스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14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해당 전시장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따른다.